

충청북도의회위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 강우신의원외 6인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4년 10월 13일

○ 회부일자 : 2004년 10월 14일

다. 상정일자 : 제232회 임시회

○ 2004년 10월 2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강우신의원)

가. 제안이유

○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은 충청북도공무원의 예에
따를 수 없는 불필요한 준용규정을 정비하고 자함

나. 주요골자

○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등의 지급에 대하여는 본 조례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준용규정으로 삭제

3. 검토보고 요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승진)

-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은 충청북도공무원의 예에 따를 수 없는 불필요한 준용규정으로,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의회위원회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9
----------	-----

발의연월일 : 2004년 10월13일

발 의 자 : 강우신의원의외 6인

제안이유

-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은 충청북도공무원의 예에 따를 수 없는 불필요한 준용규정을 정비하고 자함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등의 지급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준용규정으로 삭제

참고사항

-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충청북도의회 조례 제 호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을 삭제하고 “여비의”를 “여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u>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충청북도공무원의 예에 따른다.</u>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충청북도공무원의 예에 따른다.